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획조정관”을 “금융분쟁대응TF단장”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소송실무위원회) ① 제6조에 따른 중요사건의 관리와 대응을 위해 소송위원회 아래 소송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송실무위원회는 소송총괄관, 소관부서장, 소관부서 담당사무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속 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구성한다.

③ 소송실무위원회는 소송대응전략 마련, 준비서면 검토, 중요사항에 대한 소송위원회 상정여부 등을 심의한다.

④ 소송실무위원회는 소송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대리인(변호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배석시킬 수 있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소송대리인등 선임제한)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변호사

2. 위임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

계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변호사

3. 소제기일 당시 금융위원회 소관 동종사건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 중인 변호사로서 당해 소송사건 등을 처리함에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기서 동종사건이란 처분의 근거법률이 동일한 사건을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불성실한 소송수행 등으로 인해 패소 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의3(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금융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임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행위

2. 수임 사건 상대방의 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는 행위

3. 기타 수임 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

② 전항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당해 사건의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소송사건 등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부패방지를 위해 변호사로부터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조정관에게 분기별료”를 “금융분쟁대응TF단장에게”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소송위원회) ① 소송위원회는 사무처장, 법률자문관, <u>기획조정관</u>, 행정인사과장, 소송총괄관, 소관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p> <p>② ~ ⑤ (생략)</p> <p><u><신 설></u></p>	<p>제7조(소송위원회) ① ----- ----- <u>금융분쟁 대응TF단장</u>----- -----.</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u>제7조의2(소송실무위원회) ① 제6조에 따른 중요사건의 관리와 대응을 위해 소송위원회 아래 소송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u></p> <p><u>② 소송실무위원회는 소송총괄관, 소관부서장, 소관부서 담당사무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속 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구성한다.</u></p> <p><u>③ 소송실무위원회는 소송대응 전략 마련, 준비서면 검토, 중요사항에 대한 소송위원회 상정여부 등을 심의한다.</u></p> <p><u>④ 소송실무위원회는 소송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대리인(변호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배석시킬 수 있다.</u></p>
<p>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①</p>	<p>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①</p>

~ ③ (생략)

④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금융위원회에서 퇴직한 변호사를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소송대리인 등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⑤ (생략)

<신설>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제8조의2(소송대리인등 선임제한)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변호사

2. 위임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변호사

3. 소제기일 당시 금융위원회 소관 동종사건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 중인 변호사로서 당해 소송사건 등을 처리함에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기서 동종사건이란 처

<신 설>

분의 근거법률이 동일한 사건을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불성실한 소송수행 등으로 인해 패소 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의3(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금융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임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행위

2. 수임 사건 상대방의 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는 행위

3. 기타 수임 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

② 전항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당해 사건의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소송사건 등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부패방지를 위해 변호사로부터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소송진행상황의 보고) ① 제13조(소송진행상황의 보고) ①

(생략)

② 소송총괄관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요사건의 소송진행상황에 대하여 사무처장, 법률자문관, 기획조정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고, 사건 대응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② -----

- 금융분쟁대응TF단장에게 --

-----.